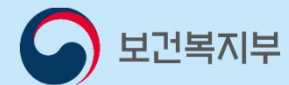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

2021. 12.



01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02 2022년 주요 지침 변경 사항

03 향후 추진 일정





01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02 2022년 주요 지침 변경 사항

03 향후 추진 일정

1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구분		2021년	2022년(안)	비고
공공형	공익활동	- 590,320명(추경 10,000명 별도) * 지원단가 : 월 27만원, 평균 11개월 * 부대경비 : 180천원	- 609,205명 * 지원단가 : 월 27만원, 평균 11개월 * 부대경비 : 180천원	사업량 확대
	재능나눔활동	- 15,000명 * 10만원, 8개월	-	삭제
사회서비스형		- 45,000명(추경 10,000명 별도) * 지원단가 : 월 594천원, 10개월 * 수당 : 1,458천원, 부대경비 : 532천원	- 65,000명 * 지원단가 : 월 594천원, 10개월 * 부대경비 : 1,991천원(수당 1,485천원 포함)	사업량 확대
민간형	시장형	- 35,816명 * 지원단가 : 연 2,670천원	- 38,000명 * 지원단가 : 연 2,670천원	사업량 확대
	취업알선형	- 75,000명 * 지원단가 : 150천원(지자체보조), 50천원(민간보조)	- 82,000명 * 지원단가 : 150천원(지자체보조), 50천원(민간보조)	사업량 증가
	고령자 친화기업	- 30개소, 3억원	- 30개소, 3억원	전년동
	시니어인턴십	- 38,000명 * 지원단가 : 370천원, 6개월	- 45,000명 * 지원단가 : 370천원, 6개월	사업량 확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 5,000명 * 지원단가 : 320천원, 5개월	신규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 4,753명 * 지원단가 : 월 1,893천원(시도), 월 1,877천원(수행기관) * 처우개선비 : 1인당 연 1,261천원	- 5,101명 * 지원단가 : 월 1,976천원(시도, 수행기관 통합) * 처우개선비 : 1인당 연 1,261천원	인원 확대

'21년 801천개
→
'22년 844천개
사업량 확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2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내실화



선발기준 개선

-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 내 신체활동능력 구체화(보행능력 외 활동능력 측정)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시니어 학대피해 아동지킴이, 노인 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경륜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업의 공익적 가치강화

▶ (공익활동) 지역상생활동 운영 일원화

- 기존 공익활동 내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은 활동내용이 민간업체의 수익을 위한 측면 존재
- 수익구조가 취약하나 공공성이 높은 지역상생활동의 공익활동 운영체제로 일원화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도입) 기업의 공익적 관심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기업 수요와 신노년 세대의 경륜을 결합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 기존 사회서비스형 >> 수요처 자부담없이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활동지원
 - 선도모델 >> 일부 기업 자부담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01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02 2022년 주요 지침 변경 사항

03 향후 추진 일정

1 공통사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1년

'22년

공공형	공익활동	★삭제
	재능나눔활동	
사회 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신설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공공형	공익활동	★신설
사회 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변경 사유

- '22년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사업 추가
- '22년 재능나눔활동 폐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1 공통사항

재능나눔활동

'21년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활동

'22년

(삭제)

변경 사유

- 재능나눔활동이 노인자원봉사와 통합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 1 외부 자원 활용(기업 펀딩, 수요처 자부담, 공공부문 별도예산 등)
- 2 수행체계 간소화(수요처(또는 고용기업) 또는 직접고용 등)
- 3 신노년세대 경력활용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정의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사회적가치 실현이 가능한 직종분야 기업 등의 수요처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고용하는 직무모델 개발

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예산지원 사업
- 복지부 → 개발원 → 고용기업·수행기관 등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2만원 * 5개월 지원
(연간 최대 1인당 160만원 지원)

1 공통사항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1년

▶ 참여 신청 제외자

(신설)



'22년

▶ 참여 신청 제외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 신청서 제출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신청서 제출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알선형 제외),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변경 사유

- 국적 취득 외국민의 참여 가능 여부 내용 추가
-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 반영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1 공통사항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1)

'21년

▶ 담당자

- 12개월, 월 1,893천원
- 성과급 연 1,261천원
- 성과급 예산은 별도반영



'22년

▶ 담당자

- 12개월, 월 1,976천원
- 처우개선비 연 1,261천원
- 처우개선비 예산은 별도반영

변경 사유

- '22년 예산안 반영하여 지원금 상향 조정
- 성과급 → 처우개선비로 명칭 변경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1 공통사항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2)

'21년

▶ 배치기준

-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20명당 1명
- (시장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 (취업알선형) 참여노인 100명당 1명



'22년

▶ 배치기준

-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12명당 1명**
- (시장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 (취업알선형) 참여노인 100명당 1명

변경 사유

- 사회서비스형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 완화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1 공통사항

사업단 팀장 운영

'21년

▶ 팀장수당

월 3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
(예산 범위 내)



'22년

▶ 팀장수당

월 4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
(예산 범위 내)

변경 사유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안전 관련 팀장의 역할 추가에 따른 팀장수당 증액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1

공통사항

부대 경비 집행 관리

'21년

'22년

문화활동비

- 담당자 외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불가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가능

공공요금
中
전화요금

- 연 84만원(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 연 70만원(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 사업유형별 부대경비(사업비)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변경
사유

- 문화활동비 집행 시 담당자 외 동행하는 기관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예산 편성 반영
-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탄력집행 가능하도록 반영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1

공통사항

주체별 주요 역할(1)

'21년

'22년

지방자치단체

- 시·도 협의체 운영협조 등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협조 등

보건복지부

<신설>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변경
사유

- 시도협의체 명칭 및 역할 변경에 따른 운영주체별 협의체 운영 역할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1

공통사항

주체별 주요 역할(2)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지역상황 고려), 지역전문가(수행기관 대표 등) 으로 구성 가능
- ※ 운영 시 안전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대표), 수행기관(대표) 등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연 2회 이상 운영



- 기본과제 및 제도개선 협의, 긴급현안 대응 등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2 공익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운영(1)

'21년

사업 정의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참여 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한 활동

※ 2020년 운영된 시장형사업단에 한해 이관 운영 가능하며, 신규 사업운영 불가

'22년

-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환경재생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2021년 운영된 지역상생활동 중 '지역상생 활동 작업장' 및 '지역 재생환경 활동' 사업단에 한해 운영 가능하며, 신규사업 운영 불가

변경 사유

- 공익활동 사업정의에 부합하도록 지역상생활동을 재정비하고, 사업운영방식도 공익활동 기준으로 통일

2 공익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운영(2)

'21년

'22년

사업 운영

구분	내용
참여자격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
선발기준	시장형사업단 선발기준표에 따름
활동비	참여노인 1인당 월 27만원 지급 + 추가 수익금
수익금 관리	참여노인 활동비로만 사용 가능
유형	지역재생환경활동, 활동작업장, 기타

구분	내용
참여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신청 및 선발 가능)
선발기준	공익활동 선발기준표에 따름
활동비	참여노인 1인당 월 27만원 지급
수익금 관리	수익금은 참여노인을 위한 부대경비로 활용
유형	지역재생환경활동, 활동작업장 (※ '23년 사업유형 폐지 예정)

변경 사유

- 공익활동 사업정의에 부합하도록 지역상생활동을 재정비하고, 사업운영방식도 공익활동 기준으로 통일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2 공익활동

수요처 및 수요자

'21년

'22년

수요처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 직원,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 직원,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 **(단, 지역 특성(농어촌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 시 활동 가능)**
 - ※ **지자체 승인 시 - 관할 지자체 공문(해당 사업단, 별도 적용 사유 등) 근거 필요**

변경 사유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가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가능하도록 변경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2 공익활동

참여자 교육

'21년	구분	내용	
	교육 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 인권교육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참여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활동교육(참여자 기본·소양관련 교육 등) 3시간, 안전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실시 하되 잔여 교육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조정 가능 ·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히 실시 		



'22년	구분	내용	
	교육 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 인권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 등)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참여기간 3개월 이하의 경우 활동교육(참여자 기본·소양관련 교육 등) 3시간, 안전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실시하되 잔여 교육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조정 가능 ·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 기관 및 지역 내 전문교육기관 연계, 관련 공공기관의 교육과정 활용 가능 		

변경 사유

- 참여자 교육 기타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방법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2 공익활동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21년

'22년

사업 참여 제한

- 참여자가 공익활동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타인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자가 공익활동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성희롱 및 성범죄 행위 등의 품위손상, 기타 수사기관에 의뢰된 범죄사건·사고 포함), 타인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사유

- 성희롱 및 성범죄 행위 등, 기타 수사기관에 의뢰된 범죄사건·사고 시 참여 제한하도록 반영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2 공익활동

수요처 관리 및 유의사항



규정 신설

- 수요처 중 장애인 관련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필요를 안내하고 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조회 방법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수행 기관 또는 수요처의 장에게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참조

변경 사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수요처 중 장애인 관련시설을 포함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안내 실시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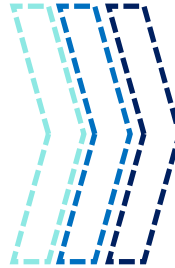
참고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변경 사항

'21년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만세)			
주소				
필수 기재 사항	참여자격 (공통) 건강보험 직장가입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생활 □ 비해당 □ 해당(직장가입자) □ 해당	기초생활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만 65세 이상 신청자 기초연금수급 □ 수급 □ 미수급	장기요양 □ 등급 없음 □ 미수급 □ 등급 있음		
	만 60~64세 신청자 차상위계층 여부 □ 해당 □ 비해당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2021년 신규 신청 □ 2020년 참여 □ 2019년 이전 참여			
세대구성 (주민등록기준) □ 경제력 능력이 없는 가족 동거 □ 경제력 능력이 있는 가족 동거 □ 노인부부 □ 노인독신 □ 기타				
신청 프로그램	① (수행기관명) □ (사업유형) □ (프로그램명)	② (수행기관명) □ (사업유형) □ (프로그램명)		
선택 기재 사항	최종학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력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스마트폰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 PC, 태블릿 등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IT제품 활용 여부 □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앱, 인터넷, 동영상 시청 등 가능 □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앱, 인터넷, 동영상 시청 등 불가능			
○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참여제의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00000000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동의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2년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만세)			
주소				
필수 기재 사항	참여자격 (공통) 건강보험 직장가입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생활 □ 비해당 □ 해당(직장가입자) □ 해당	기초생활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만 65세 이상 신청자 기초연금수급 □ 수급 □ 미수급	장기요양 □ 등급 없음 □ 미수급 □ 등급 있음		
	만 60~64세 신청자 차상위계층 여부 □ 해당 □ 비해당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2022년 신규 신청 □ 2021년 참여			
	세대구성 (주민등록기준) □ 경제력 능력이 없는 가족 동거 □ 경제력 능력이 있는 가족 동거 □ 노인부부 □ 노인독신 □ 기타			
	신청 프로그램	① (사업유형) □ (프로그램명)	② (사업유형) □ (프로그램명)	★문서관소화 (수행기관명 삭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 2차 접종 □ 1차접종, 미접종				
선택 기재 사항	최종학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력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스마트폰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 PC, 태블릿 등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IT제품 활용 여부 □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앱, 인터넷, 동영상 시청 등 가능 □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앱, 인터넷, 동영상 시청 등 불가능			
○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참여제의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00000000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동의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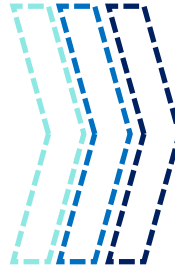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변경사항

'21년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합계				100(105)
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0원	60
			0원 초과~5만원 이하	5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가구	0원	60
			0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나	참여경력	신규참여자*		5
		해당없음		0
다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5
		노인독신가구		3
		노인부부가구(2명)		1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라	활동역량	보행능력	양호	15
			미흡	12
				9
				6
				3
	의사소통	양호	15	
		미흡	12	
			9	
			6	
			3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접종		5
		미접종		0
바	만 60~64세 차상위 자격	차상위 계층 해당		60
		해당없음(공익활동 참여불가)		0



'22년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합계				100(115)
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0원	60
			0원 초과~5만원 이하	5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가구	0원	60
			0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나	참여경력	신규참여자*		5
		해당없음		0
다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5
		노인독신가구		3
		노인부부가구(2명)		1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라	활동역량	보행능력	양호	15
			미흡	12
				9
				6
				3
	의사소통	양호	15	
		미흡	12	
			9	
			6	
			3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가점)	2차 접종 완료		5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접종		0
바	만 60~64세 차상위 자격	차상위 계층 해당		60
		해당없음(공익활동 참여불가)		0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자 배점항목 변경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공익활동 활동일지 변경 사항

'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일지(예시)

기관명		참여사업명						
		수요처명(서비스대상자명)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장소	참여자 서명	확인자 서명
		시작 (00:00)	종료 (00:00)	총시간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작성요령>

- ① 참여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오른손 엄지 지장으로 대체 가능
- ② 확인자는 서명 또는 날인, 지장 가능
- ③ 활동시간과 참여자서명, 확인자서명 부분 외에는 사업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용 가능

'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일지(예시)

기관명		참여사업명							
		수요처명(서비스대상자명)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장소	안전사고 발생유무 (사고내용, 조치내용)	참여자 서명	확인자(수요처(자)) 서명
		시작 (00:00)	종료 (00:00)	총시간					
							유 / 무 - 예시) 출근 중 교통사고, 병원이송, 활동 미완료 - 예시) 활동 중 넘어짐, 응급조치 후 활동 지속		
							유 / 무		
							유 / 무		
							유 / 무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작성요령>

- ① 참여자는
- ② 확인자는
- ③ 활동시간

★ 안전사고 예방 및 활동 중 안전 사고임을 증빙하기 위한 활동일지 내 안전사고 발생유무 등록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근로조건

'21년

▶ 참여자 근무시간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22년

▶ 참여자 근무시간

주15시간, 월 60시간(4주 기준)

▶ 참여자 임금

(예산지원 기준 인건비) **조항 이동**



▶ 참여자 임금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변경
사유

- 최저임금액 상승에 따른 임금 산출 기준 조정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예산지원 기준

'21년

▶ 예산지원

(인건비)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 기본급 : 월 최대 594,000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원 :

1인당 연 1,458천원

(부대경비) 1인당 연간 53.2만원



'22년

▶ 예산지원

(인건비) 월 최대 712,800원 **조항 이동**

(기본급) 월 최대 594,000원

(부대경비) 1인당 연간 1,991천원

※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대경비로 지급

변경 사유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계산 → 부대경비로 합하여 산출·계산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근무시간, 보수

'21년

'22년

◦ 보수기준, 계산방법

구분	세부 내용
기본급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시간당 단가* × 4.345주
주휴수당	1주 주휴시간 3시간 × 시간당 단가 × 4.345주

* 시간당 단가는 9,114원 적용

※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월 만근이 안 될 시 실제 근무시간만 인정. 급여는 해당 월에 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 × 시간당 단가(9,114원)으로 지급, 단 월 최대 712,800원 초과 금지

※ 시간당 단가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처리시간 (712,800원/78.21시간)



◦ 보수기준, 계산방법

구분	세부 내용
기본급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시간당 단가* × 4주
주휴수당	1주 주휴시간 3시간 × 시간당 단가 × 4주

* 시간당 단가는 9,900원 적용

※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월 만근이 안 될 시 실제 근무시간만 인정. 급여는 해당 월에 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 × 시간당 단가(9,900원)으로 지급, 단 월 최대 712,800원 초과 금지

※ 시간당 단가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처리시간 (712,800원/72시간)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 변경 (1)

'21년	취약 계층 전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등



'22년	취약 계층 전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시니어 학대피해 아동지킴이,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

변경 사유

- 취약계층공익증진서비스 유형에 '21년 선정 신규아이템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 변경 (2)

'21년	공공 전문 서비스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공공행정 업무지원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 지원(승강기 정보 등)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등



'22년	공공 전문 서비스	<u>안전관리지원원</u>	· <u>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 관리원, 시니어국민생활 시설점검원</u>
		시니어 컨설턴트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u>공공행정업무지원</u>	·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 지원(승강기 정보 등),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u>우체국행정업무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시니어 탐방플러스, 시니어연금 가이드,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시니어 자살 예방 상담원 등</u>
		<u>미디어 전문서비스</u>	· <u>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무 및 미디어 분야 교육</u>
		<u>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u>	· <u>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u>

변경 사유

- 공공전문서비스 유형에 '21년 선정 신규아이템 추가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업무지원을 위한 유형 신설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1)

'21년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 (추가)

'22년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필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기간 등)

변경 사유

- 유의사항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2)

'21년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 (추가)

'22년

- 급여명세서 지급
-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라 급여항목 및 공제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변경
사유

- 유의사항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1)

'21년

'22년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변경 사유

-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2)

'21년

지급명세서 제출

수행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

※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안내) 참조

'22년

수행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

※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법인신고 안내-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참조

변경 사유

-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활동관리 (1)

'21년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활동 중단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30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2년

- 사업기간 중 30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변경
사유

- 활동 인정범위 조정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활동관리 (2)

'21년

※ 활동 중단 시 무급(해당 기간 활동비 미지급)



'22년

※ 활동 중단 시 무급(해당 기간 활동비 미지급)

※ 활동 중 상해나 산재 발생에 따른 요양기간은 활동 중단 기간(30일 이내)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사유

- 활동 인정범위 조정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교육

'21년	구분	내용	
	교육 내용	<신설>	<신설>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개발원 제공 자료 활용)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22년	구분	내용	
	교육 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 등)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 (개발원 제공 자료 활용)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 외부 온라인 교육: 교육 이수 및 수강 결과를 확인 가능한 교육진행기능 (예시: 개인별 수료증 또는 이수증) 		

변경 사유

- 참여자 소양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방법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형

수요처 관리 및 유의사항



- 수요처 중 장애인 관련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필요를 안내하고 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조회 방법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수행 기관 또는 수요처의 장에게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참조

• 수요처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아니더라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소속근로자(사회서비스형 참여자)에 대한 조회 필요

변경 사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수요처 중 장애인 관련시설을 포함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안내 실시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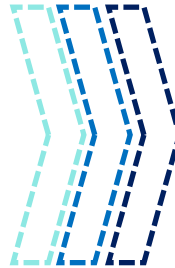
참고

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서 유형 추가

'21년

서식 3-1호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서

구 분	<input type="checkbox"/> 계속(최초 시작 2000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20-00000) <input type="checkbox"/> 2021년도 신규		
유 형	<input type="checkbox"/>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공공 전문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input type="checkbox"/> (시작일) 2021.00.00.	<input type="checkbox"/> (종료일) 2021.00.00.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22년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서

구 분	<input type="checkbox"/> 계속(최초 시작 2000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21-00000) <input type="checkbox"/> 2022년도 신규		
유 형	<input type="checkbox"/>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공공전문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기간	<input type="checkbox"/> (시작일) 2022.00.00.	<input type="checkbox"/> (종료일) 2022.00.00.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 유형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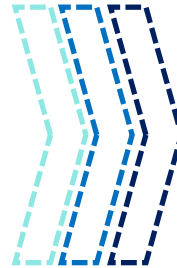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기준표

'21년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가 (필수)	활동 역량 (40점)	의사소통 역량	의사전달능력 (상)	10
			의사전달능력 (중)	5
			의사전달능력 (하)	0
			경청능력 (상)	10
			경청능력 (중)	5
			경청능력 (하)	0
			신체활동 능력	보행능력 (상)
	보행능력 (중)	10		
	보행능력 (하)	0		
	<중략>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접종	5	
		미접종	0	



'22년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가 (필수)	활동 역량 (40점)	의사소통 역량	의사전달능력 (상)	10
			의사전달능력 (중)	5
			의사전달능력 (하)	0
			경청능력 (상)	10
			경청능력 (중)	5
			경청능력 (하)	0
			신체활동 능력	①보행능력 ②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연속, ③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손 뻗쳐 닿기
		2가지 충족		10
		1가지 이하		0
	<중략>			
마 (가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	2차 접종 완료	5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완료	0	

★신체활동능력
배점항목 변경

신체활동
능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자 배점항목 변경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임금

'21년

▶ 근로계약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21년 8,720원) 이상



'22년

▶ 근로계약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22년 9,160원) 이상

변경
사유

- 최저임금액 상승에 따른 금액 변경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1)

'21년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 (추가)

'22년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필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기간 등)

변경 사유

- 유의사항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2)

'21년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 (추가)

'22년

- 급여명세서 지급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2항에 따라 급여항목 및 공제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변경
사유

- 유의사항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1)

'21년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22년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변경 사유

-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2)

'21년

지급명세서 제출

수행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

※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안내) 참조

'22년

수행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

※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법인신고 안내-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참조

변경 사유

-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참여 제한 일자

'21년

▶ 참여자 근무관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30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도포기) 가능



'22년

▶ 참여자 근무관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14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도포기) 가능

변경
사유

- 활동 중단 기간(14일)에 맞춰 실제 적용 가능한 결근일수로 축소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교육

'21년

참여자 교육

※ 전년도 계속참여자 및 반제품 제조 및 납품의 경우, 사업별 직무교육 시간을 2시간까지 단축 가능

구분	내용	
교육내용	<u><신설></u>	<u><신설></u>
특이사항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 기관 및 지역 내 전문교육기관 연계 가능	



'22년

참여자 교육

※ 전년도 계속참여자~~는~~ 사업별 직무교육 시간을 2시간까지 단축 가능

구분	내용	
교육내용	<u>기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 등)
특이사항	·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 기관 및 지역 내 전문 교육기관 연계, 관련 공공기관의 교육과정 활용 가능	

변경 사유

- 참여자 소양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방법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부대경비-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21년

▶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 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22년

▶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 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
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변경
사유

- 기관차량 유류비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수익금 관리

'21년

▶ 성과급

시장형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성과급(단, 참여노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할 수 있음



'22년

▶ 성과급

시장형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비**(단, 참여노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익금 관리

참여노인에 대한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4만원 이내로 사용

▶ 수익금 관리

참여노인에 대한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6만원** 이내로 사용

변경 사유

-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성과급 용어 변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참여노인에 대한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시 연간 비용 확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4 시장형사업단

성과 관리

'21년

'22년

시장형사업단발전형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하던 사업단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
기업의 별도 지침에 따름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하던 사업단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
기업의 별도 지침에 따름

변경
사유

- 고령자친화기업 유형변경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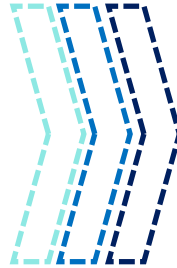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21년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특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관련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교육 이수자	5	
			해당없음	0	
		관련분야 경력자	7년 이상	25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1년 미만	5	
			합 계	100	
나	세대구성 (주민등록 등본기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0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독거노인가구		8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0
			합 계		10
다	공적 지원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미수급	0	
		60~64세 중사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0		
라	활동역량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이해력 등)	10		
			신체활동능력		10
			합 계		10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접종	5	예방접종증명서(종이서류,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앱), 증대본 신분증 스티커) 활용하여 예방접종 여부 확인* * 거짓일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당해연도 참여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제한	
		미접종	0		



'22년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특점	비고
합 계			100 (105)		
가	경력	관련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교육 이수자	5	
			해당없음	0	
		관련분야 경력자	7년 이상	25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1년 미만	5	
			합 계	100	
나	세대구성 (주민등록 등본기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0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독거노인가구		8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0
			합 계		10
다	공적 지원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미수급	0	
		60~64세 중사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0		
라	활동역량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이해력 등)	10		
			신체활동능력		10
			합 계		10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가점)	2차 접종 완료	5		
		1차접종 완료 또는 미접종	0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자 배점항목 변경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5 취업알선형(지자체)

구직자 및 구인처 관리

전면 개정

구직자 관리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수행기관 변경 시 변경 후 수행기관은 변경 전 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으로 이관 승인 조치

* 관련서식 [5-8호] 구직신청기관 변경 동의서 (삭제)

구인처 관리

구인내용은 참여자 급여, 근무조건, 기업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파견업체인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친 파견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을 수령하여 보관

변경 사유

- 유사 양식 대체(행정간소화)로 구직신청서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으로 변경동의 대체
- 중복되는 서류 삭제(서류간소화, 용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5 취업알선형(지자체)

기타 관리

전면
개정

기타 관리 (신설)

(타 노인일자리) 일시적·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타 재정지원금)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취업알선형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타부처 또는 **재정지원사업의 유사한 지원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령 가능**

변경
사유

- 사업현실을 반영하여 일회성 근로자의 타 노인일자리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인건비 등의 지원금이 없는 취업알선형 참여자·참여기업에 타 재정지원금 수령 허용 명시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취업알선형 구직자 관리(구직신청서)

2021년 구직신청서

서식 5-2호 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참여자용)

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참여자용)

※ 사경에 따라 수행기관 담당자 대리 작성 가능

필수 기재 사항	성명	전화번호	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가계
	주소		휴대폰
		(단 세)	

선택 기재 사항	세대구성형태	<input type="checkbox"/> 독신 <input type="checkbox"/> 가족동거(경제력 유) <input type="checkbox"/> 가족동거(경제력 무) <input type="checkbox"/> 노인부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희망 학력	<input type="checkbox"/> 무학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중졸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건강 상태	<input type="checkbox"/> 평상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나쁜 <input type="checkbox"/> 매우나쁨
	경력 사항	직종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선택 기재 사항	신청 동기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도움 <input type="checkbox"/> 자기발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응 <input type="checkbox"/> 시간활용 <input type="checkbox"/> 건강증진 <input type="checkbox"/> 기타
	희망 근무지역	시/도() 시군구()
	희망 직종명	① ② ③ 희망보수 월 만원
	희망 근무형태	<input type="checkbox"/> 주5일 <input type="checkbox"/> 주3~4일 <input type="checkbox"/> 주3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동일제 <input type="checkbox"/> 격일제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판매없음

취업알선형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필수 기재 사항	1. 타 재정지원자리 지원사업 참여중인 사실(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상담을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참여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취업알선형 사업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022년 구직신청서

서식 5-2호 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참여자용)

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참여자용)

※ 사경에 따라 수행기관 담당자 대리 작성 가능

필수 기재 사항	성명	전화번호	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가계
	주소		휴대폰
		(단 세)	

선택 기재 사항	세대구성형태	<input type="checkbox"/> 독신 <input type="checkbox"/> 가족동거(경제력 유) <input type="checkbox"/> 가족동거(경제력 무)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희망 학력	<input type="checkbox"/> 무학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중졸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건강 상태	<input type="checkbox"/> 평상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나쁜 <input type="checkbox"/> 매우나쁨
	경력 사항	직종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선택 기재 사항	신청 동기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도움 <input type="checkbox"/> 자기발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응 <input type="checkbox"/> 시간활용 <input type="checkbox"/> 건강증진 <input type="checkbox"/> 기타
	희망 근무지역	시/도() 시군구()
	희망 직종명	① ② ③ 희망보수 월 만원
	희망 근무형태	<input type="checkbox"/> 주5일 <input type="checkbox"/> 주3~4일 <input type="checkbox"/> 주3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동일제 <input type="checkbox"/> 격일제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판매없음

취업알선형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필수 기재 사항	1. 타 재정지원자리 지원사업 참여중인 사실(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상담을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참여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취업알선형 사업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구직기관 변경 시 변경 전 기관으로부터 000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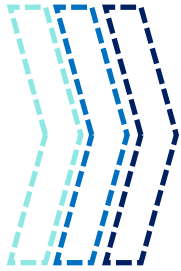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구직신청서 내 동의내용 추가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취업알선형 구인처 관리(구인신청서)

2021년 구인신청서

서식 5-4호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기업용)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기업용)

■ 기업기본정보

소속			
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성명	
근무지주소			
구인개요	- 근무내용: - 고용형태: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 업종: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미가입) - 근무시간: 주00일, 00:00~00:00		
업체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명			

※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취업알선형사업단에 구인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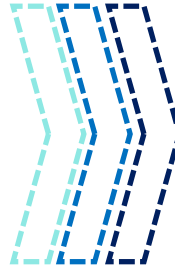
■ 상담내용

상담일자	상담방법
상담내용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233_보건복지부



2022년 구인신청서

서식 5-4호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기업용)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기업용)

■ 기업기본정보

소속			
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성명	
근무지주소			
구인개요	- 근무내용: - 고용형태: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 업종: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미가입) - 근무시간: 주00일, 00:00~00:00		
업체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명			

※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취업알선형사업단에 구인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 상담내용

상담일자	상담방법
상담내용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33_보건복지부

★ 기업직인 삭제
↓
사업자등록증 대체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취업알선형 구인처 관리(확약서)

○ 취업알선형 확약서(수행기관-구직자간)

서식 5-6호 취업알선형 확약서(비사업자)

확약서(수행기관-구직자간)

본인은 (수행기관명)의 알선으로 (구인요청자명)에 채용됨에 있어 채용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 등에 대해 (수행기관명)로부터 청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직자명) (서명)

아울러 본인은 상기문제로 인해 (수행기관명)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관련 직무투입 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구인요청자명(비사업자)	
구직자명	
업무내용	
근무기간(시간)	
월급액(시간, 주급, 연봉)	

년 월 일

이름 (구직자명) (서명 또는 인)

(수행기관명) 귀중

241

○ 취업알선형 확약서(수행기관-구직자간)

서식 5-6호 취업알선형 확약서(구직자용)

확약서(수행기관-구직자간)

본인은 (수행기관명)의 알선으로 (구인요청자명)에 채용됨에 있어 있는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 등에 대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양식 내 중복 서명 삭제 등 간소화

(삭제)

아울러 본인은 상기문제로 인해 (수행기관명)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관련 직무투입 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구인요청자명(비사업자)	
구직자명	
업무내용	
근무기간(시간)	
월급액(시간, 주급, 연봉)	

년 월 일

이름 (구직자명) (서명 또는 인)

(수행기관명) 귀중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취업알선형 구인처 관리(비사업자용 취업확인서)

○ 취업알선형 확약서(수행기관-구인요청자간)

확 약 서(수행기관-구인요청자간)

본인은(수행기관명)의 비사업자로서(구인요청자명)와 (구직자명) 간 발생할 수 있는 채용 전후의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로 (수행기관명)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관련 직무 투입 시 사전 안전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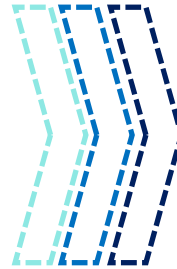
구인요청자명(비사업자)	
구직자명	
업무내용	
근무기간(시간)	
최료액(시간, 주급, 연봉)	

년 월 일

이름 (구인요청자명) (서명)

(수행기관명) 귀중

242_보전복지부



○ 취업알선형 확약서(비사업자용)

취업 확인서(비사업자용)

- 업체명(사용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사용자 전화번호) :
- 소재지(사용자 주소) :
- 취업내용(근로내용) :

취업자명 (근로자명)	주요직무	근로일수	최료액 (일급, 주급, 연급)	계약기간 (근로시간)

★ 취업확인서에 비사업자
확약서 내용 통합하여
작성으로 행정간소화

본인은 (수행기관명)의 알선으로 (구인요청자명)에 채용됨에 있어 채용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수행기관명)로부터 청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사용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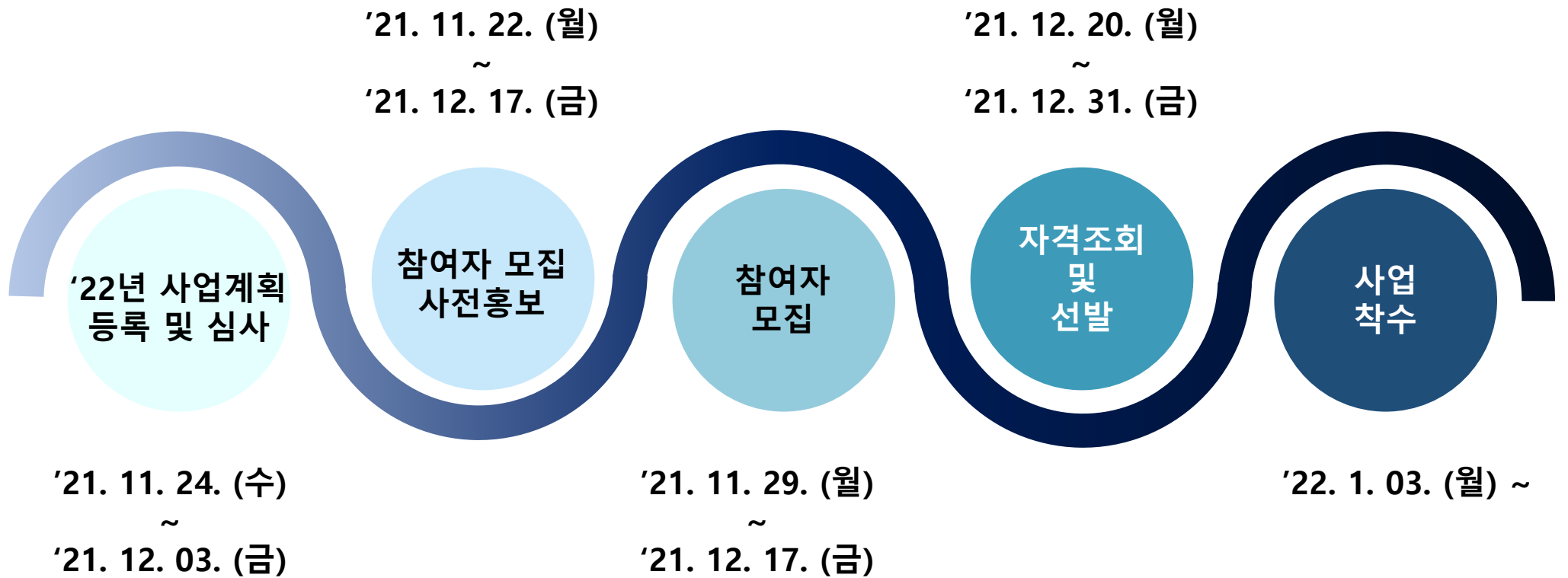
* 상기 변경사항은 최종 운영안내(지침)와 상이할 수 있음

01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02 2022년 주요 지침 변경 사항

03 향후 추진 일정

1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